

#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1751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년 8월 12일  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 보호와 경력단절 예방 및 일·생활 균형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·운영하는 시설로서,
- 나.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과 노하우, 인적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법인(단체)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- 추진근거
    -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8조(일·생활 균형 지원) 제8호 및 제45조(설치 및 기능)
   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  - 추진 필요성
    - 직장맘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공인노무사, 노동변호사 등 전문

인력의 심층상담과 분쟁해결 관련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로 전문성을 갖춘 법인(단체)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강화

다. 위탁사무 :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전반

-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, 교육, 홍보 등 지원사업
-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
- 일·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
-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
-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
- 개소일자 : 2012. 4. 1.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0길 36(자양동)
- 시설규모 : 면적 122  $m^2$ (1층)
-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기간 : 3년(2021.1.1. ~ 2023.12.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(공개모집)

사. 소요예산 : 금754백만원('21년 예산)

- 인건비 561백만원, 운영비 94백만원, 사업비 99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권고)

- 2020년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(2020.5.8.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8조 및 제45조 등

**제18조(일 · 생활 균형 지원)**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8. 직장맘지원센터 지원 확충 및 활성화

**제45조(설치 및 기능)** ① 시장은 제18조제8호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 · 생활 균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(이하 "직장맘지원센터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직장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, 교육, 홍보 등 지원사업
2.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
3. 일 · 생활 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
4.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46조(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한 지원)** 시장은 직장맘지원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직장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47조(지도 · 점검 등)** 시장은 직장맘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 · 점검 등을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호

**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**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9.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1년 민간위탁 예산안 제출

※ 예산은 예산편성(심의) 등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여성정책담당관 성평등노동팀 김수현 (☎2133-5022)